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 윤리강령

제정 2010. 12. 02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는 『글로벌 인적자원을 위한 풍요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경영비전을 가지고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국가 경제발전, 더불어 미래 다문화 사회통합이라는 미션과 비전을 근간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다문화 사회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강령을 모든 활동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우리의 약속”

(청렴 서약서 : 7대 행동 수칙)

1. 우리는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다.
2. 창의와 성실로 직무에 임하며, 작은 부분에도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건전하고 청결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한다.
4.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며,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6. 우리는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도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7. 청렴한 임직원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소중히 지킨다.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 윤리강령

[시행 2011.01.01]

[변경 2015.10.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이하 “김해센터”)의 직원이 김해센터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실천지침은 김해센터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① 김해센터의 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상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1.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의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2.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3. 합리성 :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지

제2장 임직원의 윤리

제4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모든 임직원은 김해센터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김해센터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반 법령과 김해센터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며, 김해센터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김해센터와 개인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김해센터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 제6조 (자산·정보 보호와 사용)** ① 임직원은 김해센터의 자산, 비품 등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김해센터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인제대학교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김해센터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인제대학교의 지적재산권과 경영정보, 기술정보 등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김해센터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경영정보의 작성)**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 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유지하며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제8조 (고객 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제9조 (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고객의 이익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에게 설명·고지하여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 제11조 (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김해센터가 시행하는 공사·용역·구매 등의 입찰,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12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이해관계자, 고객 등으로부터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김해센터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13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에 있어 이롭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한다.

- 제14조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방침)** ①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위험 및 재해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실천지침의 준수

제15조 (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장 및 팀장은 소속 임직원이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교육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년 1회 교육하고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

② 새로 입사하는 임직원은 입사 즉시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을 하고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

부 칙

1. 본 윤리강령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윤리강령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